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26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과경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4)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과경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6)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9)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6)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0)
-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6)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1)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0)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1)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2)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1)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659)

2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663)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2)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7)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9)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0)
  3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6)
- 

### 상정된 안건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과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4) .....	3
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과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6) .....	3
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	3
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9) .....	3
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6) .....	3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	3
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	3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0) .....	3
9.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6) .....	3
1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	3
1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	3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	3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	3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 .....	3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8) .....	3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8) .....	3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1) .....	3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8) .....	3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0) .....	3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 .....	3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4) .....	3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1) .....	3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2) .....	3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1) .....	3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659) .....	4
2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663) .....	4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2) .....	4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7) .....	4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9)	4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0)	4
3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6)	4

(14시04분 개의)

○**소위원장 부승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5일 상정한 법률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등의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4)
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6)
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9)
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6)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0)
9.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6)
1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1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8)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8)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1)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8)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0)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4)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1)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2)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1)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659)
2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663)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2)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7)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9)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0)
3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6)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2건의 동의안과 2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및 제2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2건의 파견동의안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한·UAE 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2011년 1월부터 파견된 국군부대(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이 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아크부대의 파견은 우리 군의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UAE 주재 교민들의 안전보호에 기여하며 교류 확대 등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도 상호 국방 협력 강화를 위한 파견 연장을 요청하고 있으며 아크부대의 파견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간 연장하려는 동의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파견연장 동의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듯이 파견 규모, 파견 기간, 종료 시점 및 중장기 부대운용·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아크부대의 활동이 국제평화 유지라는 헌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 사항의 관련 법령에 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내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여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이 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유사시 안전한 정박의 보장을 위해 인근 국가들과 MOU 체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해부대의 파견은 2009년 파견 이래 총 43진이 파견되어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해양안보작전에 적극 동참하는 등 파견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1년간 연장하려는 동의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파견연장 동의안은 해외파병 예산의 전제가 되는 점 그리고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서 국회 정기회인 9월 1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파견연장 동의안의 제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차관님,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 이것 언제, 목표 연도가 있나요? 지금 간 지 얼마나 됐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최초 파병이 2011년……

○**김병주 위원** 2011년인데 지금 14년, 15년째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23진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주 위원** 거기 아크부대에 가 보면, UAE에 가 보면 우리가 최초 파견할 때는 UAE 군 건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원전 하면서.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교육시키는 목적은 사라졌고 우리가 훈련하는 목적이 주가 되고 나머지 그 주변의 교민 안전 이런 목적인데 이것도 어떤 목표 연도가……

이것을 꼭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황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소말리아 같은 데는 소말리아 상황에 따라서 지속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면 되는 건데 UAE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제한 하는 것보다 어떤 목표 연도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현재 목표 연도는 없습니다. 파견 목표 연도는 없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규백 위원님도 동일한 지적과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아크부대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드린 이후에 혹시 정말 목표 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목표 연도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지금 UAE하고 방산협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는 동의안 통과에 동의하는데 매년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UAE하고 협의를 해서 규모를 줄이든가 아니면 단계별 철수를 한다든가, 취지가 끝났으면 그런 탄력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워야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소말리아는 그런 것 없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김병주 위원** 소말리아는 주 목적이 뭘까요?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거기가 평정이 됐고, 걸프만 해역에서의 그것인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상안전 확보가 추가 되고 또 관련된 인근지역에서의 주민 보호 또 연합작전과 관련된 능력들도 있고요. 일단 다른 부처 외교부·해수부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요청들, 지원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같이 임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20페이지, 한기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에서는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 각종 급여 및 예우를 하려는 동 개정안이 명예심 제고,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나아가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기 전사·순직자의 유족에도 소급 적용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유관 법률 개정 논의도 일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에 동의하고,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개정안에 동의하고, 개정안에서는 법 시행일자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 시행 전에 사망하신 분도 다 같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방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일부 수정안을 냈습니다. 저희가 했을 때 매년 한 13억 정도 예산이 추가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국방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수정안은 22쪽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한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600명,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국방부차관 김선호** 연간 한 13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21대에도 이게 왔다가 폐기됐던 것 같은데, 13억이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이분들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재부가 또 반대해서 그려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기재부는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었고 재원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재원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기재부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기재부를 잘 설득시켜서 이번에는 통과시켰으면 좋겠네요.

○**한기호 위원** 지난번에 이 안은 법사위까지 갔는데 여기서 뭘 문제 삼았냐 하면 경찰, 소방공무원에 대한 것을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알지만 이번에는 유용원 의원님하고 박대출 의원이 경찰·소방공무원도 전부 같이 올렸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같이 병합 심리가 돼서 조치될 겁니다. 당시에 형평성 때문에 법사위에서 보류됐던 겁니다.

○**임종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28쪽 조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직계 친족이 없는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재해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로 넓혀 사망한 군인에 대한 국가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경우 형제자매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다른 직역의 재해보상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은 국방부의 경우 타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 역시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의견입니다.

그 근거는 지금 현재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돼서 공무원과 연계됐을 때 그런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과거 2014년도의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 점이 있고 또 이 내용에 보면 시효 전체를 소급해서 다 지급하는 것들이 부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청구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나 안정성 이런 것에 있어서 심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조국 의원님이 우리한테만 법을 낸 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법을 냈어요.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보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님, 우리가 보면 맨날 벽에 부딪히는 것이 공무원하고의 형평성인데 사실 군인하고 공무원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잖아요, 공무원하고 군인 신분은.

○**국방부차관 김선호** 신분에 있어서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주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법무관리관님,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하는 업무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임관이라든지 이런 연령들이 다른 공무원보다는 좀 빠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단순히 그렇게 하면 기재부나 다른 부처를 설득 못 하지요. 예를 들어서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면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되잖아요, 사수하라 그러면 사수하고. 공무원은 그렇나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업무 수행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김병주 위원** 아니, 헌신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소방관은…… 아니, 이것은 정확히 국방부에서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데 소방공무원이나 경찰은 자기 죽을 줄 알면서 상급자가 들어가라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나요? 거절해도 형법상이나 이런 데 제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군인은 죽을 줄 알지만 사수하라고 그러면 사수해야 되는 거고 죽을 줄 알지만 공격 앞으로 하면 공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 안 가면 군형법상 처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유일하게 직업군 중에서 신성하다는 단어를 쓴 것이 군인이잖아요. 신성한 경찰의 임무, 신성한 소방관의 임무라고 명시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성하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도 국가가 요구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가 정확히 개념을 잡고 기재부라든가 공무원 사이에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뒤에 국방부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자꾸 공무원하고 군인을 똑같은 수준에 놓고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앞의 것도, 한기호 위원님이 발의했던 유족 관계된 이런 것도 그 위에 가면 공무원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걸리는 거고 그렇지요. 군인은 법도 적용이

다르잖아요, 군법을 적용하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반 법을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 법무 관리관님?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하고 맨날 공무원과 비교를 당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군인연금이나 이런 문제도 보면 맨날 공무원하고의 형평성, 모든 게 공무원하고 공무원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병주 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하면 이번에 문제되는 것, 경찰들 같은 경우 특경비라고 해서 마치 봉급처럼 쓰던데 특경비 하면, 경찰들 특수경비비용인가 해서 30만 원, 40만 원, 검찰들은 70만 원 이래 받더라고요. 그거 월급처럼 써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왜 군인들은 특수임무비 안 줘, 경찰하고 맨날 비교하면? 그러니까 군에 유리한 것은,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공무원과 똑같이 하려고 그리고 저쪽에 유리한 것은 적용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사실은 여기 국방부부터 좀 문제예요, 국방부 조직이 공무원으로 주로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기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에게 연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무원이든 아니든 군인이든 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연금을 누가 받느냐는 건데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지금 형제자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바꿔지느냐 하는 것은 기재부나 국방위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단순하게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형제자매에게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연금법이 사학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다 안 들어가 있어요, 형제자매가. 그래서 좀 기다려 보고 같이 가는 것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한기호 위원님 말에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맨날 답변이 공무원하고의 형평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앞의 것도 그 규정부터 좀 다시 해서 끊임없이 설득 작업을 하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은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기재부 혹시 나와 있나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기재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직책하고 성명, 내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죄송합니다.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십의관님, 이게 형제자매까지 확대될 때 재정이 연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현재 제가 자료를……

○소위원장 부승찬 추계, 대충 추정했을 때.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국방부 보건복지관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유족의 범위를 저희 공무원·군인연금, 모든 연금 법에 대해서는 직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 인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족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형제자매는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일체 갖고 있지 않고 이 법이 시효를 과거까지 기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순직유족연금이나 상이유족연금은 군인연금법이 만들어진 63년부터 기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추계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류로 하시고요.

다음 서미화 의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40쪽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규정의 주요 내용은 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신장애 판정기한을 현행 퇴직 후 6개월 이내에서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중단에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병사 등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6개월 이내라는 판정기한에 의하여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판정기한을 정하는 것은 국가가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에 대하여 본연의 책무를 다한다는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정신장애 진단에 기간이 더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판정기한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은 일단 부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것처럼 내용을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법안입니다.

장애보상금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서 전역 시점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위로금의 형태입니다. 이것을 18개월 이후까지 연장하는 안을 내주셨는데 지금 현재 법안에 보면 6개월 이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사실 보상기간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처리를 위한 소요시간에 대한 6개월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6개월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전역 이후에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장애를 인정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문제, 저희가 과거의 판례를 좀 보면 이것도 2024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전역 후 장애가 확정된 군인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는데 군인연금법이 합헌이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적용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현재 이 법안은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국방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종득 위원** 제가 생각해도 18개월 이후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법안을 낸 이유는 실제 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득보다는 다른 분쟁이라든가 문제 소지가 훨씬 더 커서 이 자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제가 물어봐야 될 게, 국방부에 실제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군에서 병인이 돼 가지고 병이 났다는 것을 6개월이 초과해서 안 해 줬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것들이 있을 텐데 민원 들어온 것이 없어요? 있으니까 이게 법안이 발의됐을 거예요. 누가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보건복지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을 제기받은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병의 경우에는 공무상 발생만 한다고 하면 공상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상금을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의무조사가 자연됐다는 것에 대한 것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의무조사도 1개월 이내에 다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에 대한 민원 소요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의원님이 이 법을 냈을 때는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있어서 법을 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좀……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께서는 특히 조현병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신과 질환에 특히 주목하셔서 PTSD라든가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복무 이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신과의 경우에는 특별히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들과 논의를 하고 저희 쪽 자문위원에게 논의를 해 보면 정신과 질환의 경우에는 장병들이 입영을 할 때 입영판정검사 또 부대 입영할 때 입영검사 또 심리검사, 인성검사 또 1년이 되면 상병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복무 중에 PTSD 요인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상병을 판단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많은 재해보상 심의를 하지만 조현병의 경우에는 부대적 요인보다는 개인적이고 유전적인 요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해보상은 신청을 청구하셔도 청구율이 매우 낮습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아까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PTSD나 조현병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발병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PTSD 같은 경우는 사건 발생 후 1개월에서 1년 후에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도 있게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냥 6개월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18개월은 과다할지라도 병의 특성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개월 수를 6개월에서 연장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6개월이냐 10개월이냐 18개월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보다는 정신질환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군에서 있을 때 충격이든 계기로 해 가지고 그게 6개월, 10개월, 18개월 후에 발생됐다라는 연계관계를 증명해 보이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거기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돼 가지고 많은 쓸데없는 소요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하여튼 연구 결과가 일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현행 6개월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까는 6개월이 행정처리기간을 의미한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6개월에 얹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인과관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서 보상이나 이런 것을 못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소위 심사자료 48페이지, 안규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또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의 분양 가상한제 등의 규정을 준용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1월 15일 날 있었던 대체토론 시에 부승찬 위원님께서 국방부는 현행법에 따라서 위례부지 A1-1을 군인공제회에 매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매각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악순환이다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개정안은 군인공제회가 저가에 우선적으로 공급받은 해당 토지 등에서 무주택 군인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군인공제회가 보유하게 되는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하려는 입법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에서도 해당 토지 등을 군인공제회와 그밖의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정하여 추가적으로 군인공제회가 해당 토지 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3조의 경제적 비용 고려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 원칙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하 고려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인공제회가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높은 토지들을 선점하는 경우에는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잔여 토지들만 남게 되어 매각 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 군인공제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라는 점에서 해당 토지들을 바탕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대부분이 무주택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결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의 관리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하단입니다.

개정안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서 주택법 제57조의 분양가상한제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하여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이러한 분양가상한제와 연계된 실거주의무, 거주실태 조사 등의 규정을 함께 적용하고자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정의견은 52페이지 하단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관련된 법안 개정안의 법 취지에 국방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마지막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시해 준 의견처럼 지금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한계가 있는데 이게 주택법과 연계해서 실거주의무, 전매 제한 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같이 도입해서 적용하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해 준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수정해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님, 21대에도 군인공제회에서 뭐 요구해서 위례에 뭐 해 준 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죠? 지금 기억이 안 나서. 21대에 왜 땅 구매와 관련해서……

○**국방부차관 김선호** 시설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입니다.

21대 마지막에 안규백 위원님께서 똑같은 법안을 하셨다가 폐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땅 구매에 관련해서 한번 법안을 통과시켜 준 적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 기억 안 나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예, 한번 확인은 해 보겠는데 지금 당장……

○**김병주 위원** 그때 범위가 얼마였는데 얼마 이상은 뭐 구매하고 법적……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위원장님, 그것 10조 2항 관련된 게 21대 국회 때 개정해서 들어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10조 2항이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예.

○**김병주 위원** 뭐에 대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51쪽.

○**임종득 위원** 분양가상한제?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아니요.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된……

○**김병주 위원** 그게 뭔 내용이에요,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시설국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0조 2항은 현재 공공 택지를 법에 따라서 분양하는 택지를 군인공제회가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이고요. 통상 LH 등이 택지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서 택지 분양을 했을 때 군인공제회에 그 택지를 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제3항은 국방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3항에 따라서 시행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때 개정할 때 다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이때도 어렵게 어렵게 소위하고 국방위에서 통과시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는데 또 왜 이렇게 올라온 거지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2항에 따른 사업은 계속 그렇게 개정해 주셔서 군인공제회에 진행을 했는데 3항에 따른 사업이 아직까지 없었고 저희가 올해 초,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추후에 개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을 할 때, 그때도 제 기억에 330만m<sup>2</sup> 이상 이렇게 한정하고 이렇게 기존 법하고 충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방위원들이 전향적으로 해서, 대단히 노력해서 그런 절을 해 줬어요, 사실은. 그럴 때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군인공제회에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국민들 시각의 눈높이로 보면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마치 특혜를 주는 것 같고.

군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이런 법 취지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해 줬는데 또 뭘까 하고, 그때도 군인공제회에서 와서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지지를 했는데 이번에도 21대 끝날 때, 그것도 끝나기 한 달 전에 이 법을 급조로 안규백 의원님이 발의를 하고 해서 그때는 기간도 안 찼고 그 안에 또 해 달라고 무리하게 막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작년 21대 때 법안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어서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그때도 21대 끝나기 한 달 전에 이것을 갖고 와서 부랴부랴 안규백 의원님이 발의했고, 제가 봤을 때 그때 해 주고 싶어도 시한이 도저히 안 돼서 폐기 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전에 한 2년 전에 이렇게 '330만 제곱미터' 이런 것 어려웠는데 그때 기재부도 설득시키고 많이 했었거든. 저도 그 때 기재부 간부들 오라고 해서 설득시키고 해서 해 줬는데 또 이렇게 비슷한 사항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공제회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과 충분한 스터디를 안 하고 임시방편적으로 필요하면 또 법안 발의해 달라고 하고 필요하면 법안 발의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좋은 행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방부가 군인공제회를 통제하나요? 통제권한이 있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국방부 관련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 주니까 군인공제회에서는 이사장 바뀌면 또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통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일단 저는 군인들 복지를 위하는 그런 노력이니까 동의는 하는데 앞으로 그런 절차를 좀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사실 직업군인들이 다른 직군에 비해서 자금 효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돈을 절약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직업 특성상 갖은 이사도 있고 사실 저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인 간부들에게 주택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사실은 이러한 제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 이 부분들은 반드시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것은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49페이지에 보면 ‘2014년 동탄2신도시의 경우 공급세대수가 344세대인데 이 중 군인 등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이 260건으로 75.6%에 달한다’라는 것은 여기 무주택 군인들이 청약을 신청했을 때, 분양 신청하면 100% 다 소화하고 나머지 것을 일반분양으로 가는 건가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시설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2기 신도시의 민간 분양률이 한 35% 되는데요. 군인에게 3차의 기회를 주고 나서 그때도 없을 때 민간 분양을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항상 분양은 이렇게 3차까지 하나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예, 3차.

○**소위원장 부승찬** 군인들한테 3차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소위원장 부승찬** 예,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자’라고 돼 있어요, ‘자’. 52쪽에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 괄호 열고 ‘이하 사업주체라 한다’ 괄호 닫고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자’라고 하면 사실은 법인이 아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관리관님, 그렇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봐서는 ‘자’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 유용원 위원님이, 65쪽에 보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인데 이 잡종재산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법인이라고 명시를 하면 지금 군인공제회 이것 하나만 자꾸 생각하는데 LH도 해당되지요. 그렇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흥창식**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군인공제회법의 목적의 내용을 그대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게 군인공제회라고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인이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LH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춘천시 시설사업단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다 지자체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춘천시 시설사업단에서 춘천시에 있는 군용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군인들한테 분양하겠다, 그것 안 되나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시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핵심인 10조 3항에는 군인공제회를 생각하는 법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선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군인공제회가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한다면 모든 사업자에게 사실은 열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려는 자’라고 하면 좀 더 넓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기호 위원** 이게 그래서 제가 범위를 넓혀야 된다 그러는 게 ‘군인 복지를 증진하려고 설립된 법인’ 그러면 군인공제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춘천시, 우리 지역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춘천시의 군용지 중에서 상당히 많은 군용지가 있어요. 그런데 춘천시가 직접 매입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못 해. 그런데 거기다가 군인들이 아파트를 지어 달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춘천시 시설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열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시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하려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누구나 다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이 되면 군인공제회에게 우선권을 주는 정도만 들어가고 공제회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춘천의 어떤 공사나 이런 데들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전제조건이 먼저 깔려 있기는 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저는 군인공제회, LH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사업단 이러한 단체까지에게도 열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보면 열려 있지 않은데?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현행으로 돼 있는 10조 2항하고 3항에 있는 것처럼 공공주택사업자가 군인의 안정과 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현재의 법안으로도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개정안은 그것 외에 특별히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실 이것은 군인공제회거든요. 그러니까 군인공제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자가 일반 그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이 법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법 개정……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내일 심사할 동일 제명 안건이 의결되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해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해 정리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한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된 경우에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과거에 군간부후보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장교 보수액과 군간부후보생 보수액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소급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는 안이라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역 장교의 준사관후보생으로 전환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분 간 전환 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군 계급 및 서열의 역순으로 현역 장교가 준사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 장병의 직업적 안정성, 항공수당 등의 장기적인 소득 증가, 전역 후 민간에서의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적 선택 측면도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해당 특례를 규정할 경우 2022년 및 2023년도에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던 보수액을 2024년도 또는 2025년도 예산으로 추가 지급해야 함에 따른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정부 측은 조금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신중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논의할 때 국방부는 개정안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대로 부사관하고 준사관이 항공준사관으로 전환할 때는 그 이전 신분의 월급을 그대로 봉급을 받은 상태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교는 항공준사관으로 갈 때 신분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전의 장교 신분을 없애고 다시 준사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육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비용 정도만 받게

되는데 저희가 따져 보니까 22년도에 관련된 인원이 3명 있었는데 한 360만 원 정도 봉급을 받던 장교가 교육받는 기간 동안 입교 해에는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러니까 25% 정도로 월급이 확 주니까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 했을 때 현역 장교도 항공준사관으로 입교할 때는 이전 보수액으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고 그 이전에 소급 문제도 22년도에 3명, 23년도에 2명입니다. 이것들이 미보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손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급해 주는 게 맞다는 게 국방부의 의견이어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그러면 차관님, 장교가 전역한 다음에 일정한 공백이 있다가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현역으로 있다가 하는 경우는 현역……

○**한기호 위원** 그것은 그냥 후보생으로……

○**김병주 위원** 후보생으로 하는 거고.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이것은 바로 이어서 장교가 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하면서 지원했을 때 해당되는……

○**김병주 위원** 그리고 교육을 마치면 준사관 되잖아요, 장교가.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그때 월급은 어떻게 해요, 봉급은?

○**국방부차관 김선호** 준사관에 해당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김병주 위원** 교육 기간만 불리하지 않게, 현역 장교 신분도 있으니까 한다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 대위가 자기가 항공장교로서 가지고 싶은데 중위 때 항공장교들을 뽑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준사관으로 가겠다고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혼해 가지고 사는데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상으로 회복해서 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법안을 낸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부사관이 장교로……

○**한기호 위원** 부사관도 자기 봉급을 그냥 받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후보생일 때도요?

○**한기호 위원** 후보생 때.

○**소위원장 부승찬** 똑같이 받습니까?

○**한기호 위원** 예, 자기 군에서 상사로 있었으면 상사 봉급을 받아요. 그런데 장교만 안 줘요.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8항 유용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인연금법상 용어인 ‘보전금’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보전금은 회계·기금 간 거래를 통한 연금수입 확보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의 보전금 입법례와 용어의 일관성이 있고 현행 군인연금의 보전금이 국가유공자 또는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 성격의 금전이 아닌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군인의 희생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현행 공적연금법인 공무원연금법 및 관계 법률의 보상금·보전금 용어의 입법례 및 일관성 측면, 현행법의 보전금 규정에 따른 국가의 대규모 보전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도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모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발의해 주신 유용원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를 저희들은 명확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 이것을 했는데 저희가 기재부 또 관련해서 협의를 하면서 보전금이라는 게 연금 재원 부족을 국가가 채워 주는 보전의무 취지의 제도에서 나온 보전금이라는 용어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도 같은 용어를 쓰는데 이것을 보상금으로 바꿨을 때 그런 약간의 형평성이나 일률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저희도 동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대로 보전금으로 유지하는 쪽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아무래도 법을 발의하신 유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용원 위원** 차관님께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앞에 계신 김병주 위원님께서 아까 공무원과 군인의 차이점을 너무나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연금은 직역에 종사하는 전 구성원에 지급하는 것인 반면에 군인연금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특수직역 연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미국, 영국, 호주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에서도 보상 개념으로 군인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영국 여러 나라들은 군인연금 전액을 국가 보상적 차원에서 부담하는 점에서 우리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단순히 국가가 보전해 주는 재정적자 보전 차원이 아니고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차관님, 이것을 규정을 바꾼다고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재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데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군인연금법 45조에 보전금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이 법의 적용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부담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것이고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에 보면 정확하게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연금법의 목적에 기술이 돼 있는 것이어서 이것이 그런 것을 보상하는 법이라는 것이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여기서 보상이나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규정하는 문구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연금법 1조(목적)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군인들, 직업군인들께 나라에서 본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대우를 해 주려는 노력을 한다 그런 정신을 전해 주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 부승찬**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유용원 위원님이 법안을 잘 발의해 줬다고 봅니다.

지금 군인연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도 지금 손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군인연금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갈 확률이 많거든요. 항상 형평성 형평성하면서 언제는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그럴 때는 군의 형평성 하는데 그것을 군인들에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보전하고 보상하고 유지시키려면 보전금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상금이 맞기는 한데 보상금 하면 보상한다는 것을 또 특별히 대우를 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혜라는 의미가 좀 있어서.

그래서 차제에 이런 용어들을 변경을 해서 느낌이 딱 오게 하는 것 있잖아요, 군인특수기본보전금이나 이런 것들 해서. 맨날 공무원하고 형평성, 용어가 똑같으니까 공무원하고 형평성으로 똑같이 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용어를 유용원 위원님, 다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적당한 용어, 앞에 있잖아요. 누구도 손대지 못하면서 보상의 개념이 들어가는, 그런 게 특수군인보상금이 될지 특수군인기본소득 같은 개념도 있잖아요. 최저생계는 보장해 줘야 되니까, 연금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개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국방부도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지금 체제로 가다 보면 군인연금도 국민연금을 손볼 때 손보자는 여론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위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지혜를 모을 때가 됐다, 이런 용어 하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가 하나 좀 보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보면 같은 보전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거기는 보전금이라고 안 쓰고 있고 국가의 지원 이렇게 쓰면서 기금에서 부족한 것들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런 용어로 정의를 해서 아예 보전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용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1조(목적)에서 좀 더 명확하게 연금법의 목적을 강조하는 쪽으로 하고 보전금에 대한 것은 보상을 위한 기금 구성을 하는 목적에 있어서 기여금이나 부담금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개념의 보전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저희들이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고 위원님이 말씀

하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명기하는 것이 좋을지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국군현신기본지원금이라든가 바꿀 수는 있네요, 보니까.

○**유용원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셨는데, 기재부에서 나와 계신 분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입니다.

○**유용원 위원** 기재부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내신 가장 큰 이유가 보상이라는 용어 때문인가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이것은 국가재정법상 저희가 각목 비목이 있는데요. 성격상 군인 개인이 내는 기여금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는데 혹시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는데 부족한 부분은 떼꿔 준다는 개념에서 회계적인 용어로서 보전금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는 용어상 보전금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잘 유념하고 있습니다. 용어상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유용원 위원** 그러면 아까 김병주 위원님도 이런 저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용어를 바꾼다든지 이러면 기재부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겠네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그런데 모든 회계·기금들이 다 공통적으로 쓰는 개념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떼꿔 준다,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떼꿔 준다는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조항에서 보전금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기재부 과장님? 보전금은 쓰되 군인현신보전금, ‘보전금’ 들어가잖아요. ‘보전금’ 하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성 때문에……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보전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립적인……

○**김병주 위원** 아니 아니, 기재부 입장에서는 중립적일 수가 있는데 군인과 관계된 것은 중립적으로 하면 안 돼요. 군인의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지요. 군인은 군법을 적용받지 일반법 적용을 안 받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하는 회계법도 군인은 특별한 용어를 써서 특별나게 해 주는 게 맞지요. 그래서 기재부 논리라면 제가 봤을 때 군인현신보전금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것하고의 형평성을 안 따지겠지요. 보전금 하면 국가가 그만큼 보전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나쁘다든가 안 좋다든가, 또는 다른 것하고의 형평성 얘기가 맨날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용어가 조금 다르게 쓰이면 건들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 법안이 올라왔으니까 군인현신보전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저희가 용어 이런 것들은 기재부하고 내부에서 조금 더 검토하고 또 위원님하고 소통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적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유용원 의원님이 발의했으니까 용어를

조금 더 해서 다음번에 다시 올려서 이것 그대로 심의하면 되거든요. 국방부도 좋은 안을 한번 내 보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차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사실 군의 신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공직자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전 대신에 보상을 쓰고 싶어 하는 건데 보상을 쓰면 이 보전 개념을 포용할 수는 없나요, 보상의 개념에? 보상으로 쓰고, 실제로 보상의 한 방법으로서 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재부에서 혹시 제가 궁금해하는 것에 답할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용어 개념 문제는, 각 목 문제는 제 담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해서, 국가에 헌신하는 국군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에 맞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인급식기본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본 법안은 한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인급식기본법안으로서 제정법이 되겠습니다.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안 제1조에서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급식위원회를 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 국가 비상사태 및 전시 상황에서의 안정적 군 식량공급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부대는 농업·축산업·수산업 협동조합에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한 군부대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안 10조에서 군급식은 각 군 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안 제12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급식에 관한 현행 법령체계를 보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의2의 선언적 규정과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동 규정의 내용은 3개의 조문에 불과하여 군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군급식이 군 내부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장병들이 궁지와 명예심을 가지

고 국방업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식에 관한 법적 안정성 마련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유사한 목적으로 집단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정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되어 국방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중에 급식 관련 예산 및 정책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법률안 제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며 조문별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정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1조부터 마지막 조 까지 한 조 한 조 짚어 가면서 수정의견들을 제시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현재 군급식과 관련된 것은 급식규정으로 규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규정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다만 세부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한다거나 상위법으로 규정에 넣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제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국방부령이나 또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거나 하는 쪽으로 각 조항들이 개정되면 전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각 조별로 세부 심사에 들어가면 조별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법을 제정하신 한기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21대에 법을 발의해서 국방부하고 수석전문위원하고 다 같이 조율을 해 가지고 법사위에는 올라갔는데 법사위에서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예산 추계가 없다 이래 가지고 추가 검토한다고 그러다가 만료돼 가지고 사실은 끝난 겁니다.

여기 한번 4쪽을 보시면 급식 대상에 군무원을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군무원들은 급식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식 대상에 군무원을 넣었고.

그다음에 7조의 식자재 조달 위탁사업자의 범위를 제가 처음에 낼 때는 농업·축산업·수산업 협동조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넓혔습니다.

그다음에 16조에 별칙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먹는 식자재나 이걸 납품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별칙 조항을 어디에 근거를 뒀느냐 하면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서 별칙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납하는 사람들이 별칙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납품을 하게 만든 거지요.

이런 내용들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 특별히 문제는 없고, 지난번 21대 때하고 지금 국방부가 검토한 내용 중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게 7조 3항입니다. 7조 3항 검토의견이 11쪽에서 12쪽 사이에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뺐는데, 지난 번에 국방부가 바꿔 달라고 해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이나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국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처음에는 제가 ‘농업·축산업·수산업’ 이렇게 했다가 바꿔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이번에는 또 다 빼 달라고 돼 있네요. 그렇지요, 국방부?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현재 이 3·4항은 저희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21대 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국방부가 요구한 대로 안을 넣어 줬는데 이거를 빼 버리면 그러면 양꼬 없는 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국방부가 자꾸 직원들이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21대 할 때 하고 지금 밑의 실무자는 다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바뀌니까 또 빼 버리자는 거예요. 그건 안 맞지, 국방부가 존재하는데 직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는 되고 이번에는 안 되고.

국장님, 이거 왜 빼자는 거예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수관리관 이갑수입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제정안의 3항, 4항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한다고 국방부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제정안에는 ‘농·축·수산업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기타 국가가 하는 단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면 거기에 동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안에는 농·수·축협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해 달라고 한 겁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21대 때 이 문구 때문에 여러분이 논의하다가 바꿨으면 21대 때 제시한 안으로 넣어 주시면 되지 ‘빼 버립시다’하고 ‘삭제’ 이렇게 하니까 안 맞는다 이거예요. 21대 때 안을 넣자고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오케이 그러지만 빼 버리자고 하니까 얘기가 달라진다 이거지. 그러면 21대 수정안 그 문구를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동의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실무에서 문제없을 거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가 최종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처벌법이 있어요. 20쪽에 있는데 학교급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할 경우에…… 군인들이라고 더 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처벌 수준은 같이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데, 이것도 이의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가 검토한 것 중에 보면 축산법 관련된 내용들이 학교급식법에는 명기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그래서 처벌하는 양형기준이나 이것은 학교급식법하고 맞추면 돼요. 제가 특별히 이것을 더 많이 해야겠다 적게 해야겠다는 것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 군의 급식을 하는 데서 업자들이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별칙 항을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급식법과 맞춰도 이의가 없습니다, 거기다 맞춰 주기만 하면.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차관님, 저는 법 취지는 동의를 하고요. 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 접경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항목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충분히 동의해요. 하는데, 사실 이것은 다른 법하고 충돌되는 게 있어요. 21대에 통과된 법안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군급식은 군 장병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군급식이 잘 안 됐던 이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 농협, 그 지역 수산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마치 군을 호구처럼 해서 양질의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급식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병사들이 먹는 것은, 장병들의 복지에 최우선을 두고 해야 된다라고 바꿨던 거거든요. 저희들도 접경지역TF가 있고 저도 강원도를 기반으로 많이 생활을 했고 하기 때문에 접경지역 활성화에는 동의하는데 거기에 군 장병들이 자칫 잘못하면 희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우리가 신중 모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의원님이신 한기호 위원님의 취지는 저는 전적으로 이해하고 저도 접경지역 활성화는 이해하는데 그게 고민이에요. 이렇게 하면 군급식이 떨어질 확률이 많거든요. 사실 최우선은 군 장병들에게는 농협이든 수협이든 그 지역이든 그런 것 할 것 없이 최고의 양질의 식자재가 가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지역 것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병사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고민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방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무조건 ‘예’ 하지 말고 다른 법에도, 그래서 그때도 많이 논의를 하다가 한 줄을 넣은 거예요. 바꾸려고 하다가 농협이나 수협에서 하도 반대가 심해서 그러면 대원칙만 넣자 해서 군 장병들의 복지에 최우선적으로 해서 모든 걸 한다라고 여기서 법적 근거를 국방부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과거로 후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관님이나 군생활 해 보신 분 알지만 예를 들면 전방에서 닭고기가 싸지면 닭고기만 먹을 때 많고 정어리가 대량 폐사하면 하고 돼지 무슨 병 돌면 잘 안 먹으니까 그게 군에서 보급되고 이렇게 해서 장병들이 호구냐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신중 접근을 해 보고 오늘 검토는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데이터와 법 충돌 여부를 봤으면 좋겠어요.

법무관리관님, 법 충돌 여부는 확인 안 했나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아까 축산물 처벌 말입니까?

○**김병주 위원** 아니, 뭔 말을 그래 먹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법인지 몰라도 그 항에 군의 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군 장병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항목 1줄이 전에 들어갔어요. 그것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한기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7조에 이렇게 썼습니다. 국가비상상태, 전시 상황,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달아 놨어요. 그때는 우선을 둔다는 거지요. 그 문구를 잘 읽어 보세요. 무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김병주 위원** 어디 있지요, 7조 몇 항?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7조 제3항.....

○**한기호 위원** 아니, 21대 때는 그때 소위 위원장을 하시면서 김병주 위원님이 통과시킨 것 아니에요, 그때 수정해 달라는 것 다 수정해 가지고?

○**김병주 위원** 이게 언제 통과된 거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이것은.

○**한기호 위원**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이거지요?

○**김병주 위원** 아니요, 그때 그거보다도 그 법하고.....

○**한기호 위원** 아니지, 그게 말이 안 되지요.

○**김병주 위원** 그 법하고 충돌이 된다니까요.

○**한기호 위원** 충돌이 어디가 되느냐니까?

○**김병주 위원** 그 법 문구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 충돌되는 문구. 통과된 것 있잖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결국은 농협, 축협, 수협이에요. 아예 삭제가 아니라 21대 안대로 다른 기관을 넣고 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것에 위배 안 되게 취지를 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1대 안이 그게 충족돼 있는 것이고……

○**소위원장 부승찬** 그런데 지금 여기 국방부안에는 삭제를 요청하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은 지금 그게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삭제인데 아까 말씀하셨서, 21대 안으로 수정을 하면 그 내용을 받고, 지금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21대 안으로 가게 되면 장병들의 최우선 복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충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구들을 보완을 해서 이것들을 다시 의원님실하고 소통을 해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사실은 논해지지는 않았는데 각 조항별로 보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류하십시오.

○**소위원장 부승찬** 잠시만요. 그러면 추후에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는 부분 저는……

○**국방부차관 김선호** 다시 그러면 종합적으로……

○**소위원장 부승찬** 제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농수축협으로 한정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21대 안으로 가면, 물론 국방부에서 조문별로 다 수정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받아들였으니까요, 한기호 위원님께서……

○**한기호 위원** 아니, 보류하십시오. 지금 김병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보류하십시오.

○**소위원장 부승찬** 보류로……

○**임종득 위원** 의견 한번 들어 보시지요.

○**한기호 위원** 보류하십시오.

○**임종득 위원** 저도 이야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한기호 위원** 아니, 보류하자니까요. 내가 발의했으니까 보류하자 이거야.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임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지금 7조를 보시면 7조 1항에 사실은 김병주 위원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밑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검토를 여기서 결정을 하든 다음에 하더라도 ‘접경지역 안에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취지로 여기에 들어간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군부대가 있는 지역이 접경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굽식인원이 있고 논산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작전사령부라든가 전투비행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좀 열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 수산물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확장하는 게 어떨까 싶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군생활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횡성비행장 그러면 횡성비행장 소음 때문에 그다음에 요즘은 블랙이글스 때문에 주변의 농민들이 다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역농산물을 사 주는 게 맞아요, 고급의 양질의 것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기업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싶지.

그래서 저는 군인이 국민들과 상생한다고 그러면 군부대가 주둔한 곳은 그 주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 것 사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우리 군인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저 잠깐 질문……

○**소위원장 부승찬** 잠시만요.

기재부 심의관님께서 계속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들어 보고……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입니다.

4조 급식 대상에 군무원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소요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차관님,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발의하신 것에 따르더라도 전시나 비상사태 시에는 농수축협에 우선권이 가더라도 평시에는 경쟁체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협에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국방부차관 김선호** 원래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70% 정도는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 이게 계속해서 업체들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21대 때 말씀하신 그 법안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하고 여기 제정안에 나온 내용들하고 해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안을 저희들이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군인급식기본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30페이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총괄 검토로 가겠습니다.

2개의 개정안은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 또는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상당한 주의의무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개별 법률을 대상으로 사전적 또는 사후적 검증수단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판단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시설기준 외에 특별히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적 지식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바 법령 해석능력, 시설 구매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수행능력이면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여지고 현행법상 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점 그리고 허가 취소 시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수행능력을 직접·간접적으로 판단 가능한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부칙에서 현행법에 따라 제조판매업 허가 후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3년의 허가제한을 두고 있으나 동 개정안은 부칙에서 특례를 규정하여 허가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더라도 개정안 시행 즉시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마는 부칙의 특례가 없어도 현행법 제4조제4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3년의 경과규정이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칙 특례는 실익이 없는 점, 그래서 부칙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다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히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관련 규정 해석능력 그리고 등록신청서 등 작성 정도의 수행능력이면 군수품무역대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행법 시행령상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청문 과정에서 직무수행능력의 유지 가능성 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은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린 것과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병주 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차관님. 뭔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게 지금 피한정후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질병·장애·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명명하는 게 피한정후견인이고 그것은 가정법원에서 별도로 후견인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것들이 피한정후견인들의 행위 범위라든지 직업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권을 좀 더 강화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제약사유를 다 푸는 쪽으로 검토가 됐고 이번에 해당되는 것이 군복 및

군용장구에 관련된 것, 방위사업법에 관련된 것에 피한정후견인이더라도 어떠한 임무 수행에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 되면 그들을 할 수 있는 행위를 보장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소요가 좀 있던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지금 현재는 군수품대리업에 이런 피한정후견인들이 이것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 규정에.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 위원회 소관 2개의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11항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방부가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전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국방부가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모두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12항 및 13항입니다.

동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재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을 졸업생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단기 복무부사관에게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수당 제도를 단기복무장려금 제도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우수한 간부인력 지원 제고, 초급간부 처우 개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국방부는 개정안 수정의견에 동의하며, 나아가서 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을 2024년도 기임관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 일부 지급시기, 부칙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지급시기는 제정안에는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복무장려금은 24년도 임관자부터 소급적용하는 안을 제시를 했고 단기복무부사관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 법령과 관련된 준비 소요들이 있어서 이것은 2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기복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이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 단기복무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군 생활하다가 장기를 가면 이 돈을 반납합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반납하지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단기복무라고 했는데 왜 반납하지 않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것은 단기복무를 지원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그 사람에 대한 지원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보상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한기호 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군에 임관하는 출신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양성 과정에서 형평성이 자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3사관학교 지원한 사람 안 주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간부후보가 지금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지요. 주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

○**한기호 위원** 안 주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

○**한기호 위원** 안 준다니까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예.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형평성 때문에, 특히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들은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못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각 군 사관학교 3년 차가 150만 원을 받습니다. 병사들은 20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는 병만도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왜 국방부는 이것 전체를 보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해야지,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기복무장려수당 이 자체도 목돈으로 줄 거냐, 나눠 줄 거냐?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을 내년에 주지요. 12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씩 주면 2년분 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생 지원하든가 이것 지원했을 때 2년으로 나눠 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사관학교 출신들에게도 같이 50만 원씩 주면 돼요.

아니면 단기복무자가 했으면 장기복무할 때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다음에 간부후보생 이것은 전부 다 군대 생활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간 사람이니까 안 준다 그러면 거기서 단기복무하고 나오는 사람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여기 단기복무라고 준다고 그러면 후보생으로 간 사람도 단기복무하고 나오면 수고했다고 수고비 1000만 원 줘야지요, 똑같은 논리라면.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개념이 아니고 형평성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 간부들 간의 갈등을 국방부가 자꾸 조장한다는 거지요. 왜 공군 후보생, 해군 후보생은 안 줍니까? 왜 안 주지요?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도 본래 장기 목표로 가는 것은 아닌데. 장기 심사를 또 해서 가잖아요. 그렇지요? 왜 안 주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

○한기호 위원 대답을 국방부가 못 한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후보생들은 가지고…… 왜, 대답할 것 있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그 사람들도 가 가지고 후보생들이 사실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실제로 군 복무하는 게 영관장교 되고 올라가는 자체가 반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결국은 단기복무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해공군을 지원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ROTC 학사 이런 케이스만 자꾸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공군에서는 왜 공군 간부후보생들 장려금 달라고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 해군도 왜 달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고. 왜 안 줘요? 설명해 보세요, 왜 안 주는지. 논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입니다.

지금 법상에는 대학 재학생에게만 단기복무장려금을 주도록 법에 돼 있어서 지금 현재 못 주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 발의하신 내용은 학사 학위를 가지고 군에 오는, 장교로 지원하는 이에게 장려금을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현재 군 복무 중에 장교로 지원하는 인원들, 즉 간부사관들에 대해서는 재학생도 아니고 졸업생도 아니기 때문에 이 양쪽에도 다 해당이 안 돼서 지금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공군 간부후보생 조건이 뭐예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처음부터 참석을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양해의 말씀 좀 구해야 되는데, 지금 예결위가 감액 심사를 끝내고 오늘 증액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자리를 잠깐 이석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한기호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유용원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또 부승찬 위원장님께서 정말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자리를 이석해서……

○한기호 위원 예산 잘 반영해 주시면 나가도 됩니다.

○허영 위원 예, 지금 제가 초급간부들이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어서 양해해 주시면 자리를 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잘 부탁합니다.

○김병주 위원 없으니까 내가 힘들잖아, 진작 왔어야 아까 급식 그것……

○유용원 위원 격려 박수라도 드려야 돼.

○한기호 위원 격려 박수 치재.

(박수)

그런데 국방부가 지금 현재 후보생들은 주는데 학위를 갖고 장교로 막바로 온 사람은 못 주니 그 사람도 주자는 법인데 이게 정말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국방부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가 접근했던 것은 일단 졸업 후에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같은 맥락에서 지원하는데 보상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가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관후보생들한테는 왜 안 주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 법규상에 있는 것들이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런 사람한테 주는 단기 자원에 대한 보상책이다 보니까 사관생도가……

○한기호 위원 그러면 단기복무자면 나중에 장기가 되면 돈은 반납해야지.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데 이게 사후적 조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전적 조치에서 그것을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보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합의를 못 했는데 지적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와 또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단기복무장려금이 말 자체가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을 줘요. 나는 군대에 오고 싶어서 사관학교 갔어. 그러면 장기복무자니까 돈 안 줘. 말이 돼요? 그다음에 3사·간호사관학교는 또 장기복무가 아니야. 그러면 돈 안 줘. 이게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한기호 위원님의 발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형평성 자체가.

그리고 단기복무장려금 자체가 결국은 군대에 오지 말라는 것밖에, 저는 이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거든요. 나는 4년 내내 사관학교 나왔어, 나는 2년 3사관학교 가서 열심히 했어, 나는 간호사관학교 가서 4년 했어, 그런데 그냥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은 매달 수당을 받아.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특히나 3사·간호사관학교 장기복무도 차일피일 미루시면서.

그래서 저는 한기호 위원님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게 또 다른 박탈감을 낳을 수 있어요. 사관학교 나온 24살의 소위도 군인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대학을 나온 소위도 군인입니다. 그런데 ‘단기’ 자를 붙여서 차별을 해요.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이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님, 사실 우리가 법을 이렇게 만들고 수정하고 개정하는 데 제일 금기시해야 될 것이, 사실 대부분 법 발의나 이런 것들이 민원을 기초로 해요. 그런데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한 혜택을 위한 민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대단히 제한을 두고 신중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기호 위원님도 국방위 법안소위에 계속 계시는 이유도 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사실 제가 법안소위에 지금 5년째 있어 보면 민원 법안들이 많고 그 민원 법안이 어떤 전체적인 것을, 다 민원 법안을 기초로 하지요. 그렇지만 전체를 위한 민원 법안이면 적극적으로 하고 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하는 민원 법안이면 적극적으로 하지요. 그런데 어떤 특정 그룹을 위한 민원 법안은 우리가 신중 검토를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저는 성일종 의원이나 황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여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 학사장교들 확보가 어렵고 또 부사관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병사 봉급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런 법안을 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형평성이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하려면 초급간부 수당으로 해서 전체 다 쥐 버리든가요. 왜냐하면 초급간부들 월급을 봉급을 올리기가, 또 형평성으로 기재부 따질 것 아니에요, 9급 공무원 어렵고 이렇게. 어려우면, 지금 병사들 월급도 올라가지만 초급간부 수당으로 한시적으로 해서 전체를 쥐 버리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초급간부들 권익 신장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초급간부 전체 해도. 얼마 될지 한번 따져 보시고, 물론 기재부는 반대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경찰·검찰 이런 데는 아까 특경비, 들어보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봉급처럼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군 초급간부들 지금 권익 신장을 위해서 국방부장관도 일정으로 초급간부 권익 신장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것을 초급간부 수당 개념으로 해 버리면 아마 여기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들도 전체 대상을 해서 그 인원들이 차별이라기보다는 균등하게 동일한 것이 가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됐고, 그런데 지금 한기호 위원님하고 김병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영역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병행, 그리고 이 법안은 사실 한정적으로 똑같은 쪽으로 임관을 하는데 대학 재학 중에 학사장교 신청한 사람은 장려금을 받고 졸업해서 한 사람은 못 받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한기호 위원** 이게 몇 명이나 돼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한 500여 명 정도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 장려수당을 저는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육해공군을 다 털어라, 장교와 부사관을 다 합쳐라, 해서 월 50만 원으로 후보생 때, 사관학교 합격하고 그다음에 ROTC 지원하고 후보생이 돼서부터, 그다음에 임관을 빨리한 사람 늦게 한 사람 있으니까 전체 주는 기간을 2년을 잡아라, 잡아서 50만 원씩을 주라 이거예요. 내일 장려금을 주잖아요, 병사들은. 그것도 다 합친 개념으로 가면 매월 50만 원씩을 주는 거지요, 후보생 될 때 장려금으로. 그러면 이런 불평등이 다 해소가 돼요. 무슨 후보생이 됐든 50만 원씩 똑같이 부사관이든 장교든 준사관이든 그렇게 주면 그 자체가 장려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군 전체가 같이 형평성이 있고 또 나는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줘야 된다고요. 지금 자꾸 출신별로 이러니까 이게 불협화음을 자꾸 낳고 있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된 유사한 법 제정안이 내일 논의되는 장병 내일준비적금과 관련된 것들을 간부에 적용하는 안을 황희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안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딱 그 안인데 그 법안을 논의할 때 저희들 의견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빠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하여튼 국방부가 의지를 갖고, 예산 몇천억이면 될 것 같아요. 예산 한번 추계해 보세요. 초급간부들 수당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봉급 올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전향적으로 하세요. 대통령께서도 몇 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재부를 설득을 충분히 시키면 되는데 기재부 하나 설득을 못 시키면 어떻게 해요?

○**소위원장 부승찬**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14항부터 16항까지 송옥주 의원, 유용원 의원, 황명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인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훈련 등으로 인해 현물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기지급된 급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송옥주 의원안 소위 심사 시 제시된 것으로 법 개정 시 현물과 현금의 이중 지급 문제가 있다는 국방부 의견을 고려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정부 의견은 국방부는 작전이나 훈련 시 영내 급식하는 경우 현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며 간부훈련급식 지급 제도의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실비변상 규정을 위반하여 중복 지급하게 되는 문제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의견이고 설명하면, 현물과 현금을 동시에 지급하자는 의견이신데 사실 GP나 GOP 이런 데서 상시 영내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못 받고 다 현물로 급식 제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현금을 못 받는데 FEBA 지역에서 현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작전 훈련하면서 들어갔을 때 또 현물을 받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어렵고 기본적으로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외거주 간부가 불가피한 사유에 영내에 들어와서 급식을 해야 되는 경우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쪽으로 국방부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기재부 심의관님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지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24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외거주자가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급식을 기본급식 예산 내에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하단은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 법률을 통해서도 영외자가 훈련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 개정보다는 국방부가 먼저 제도 검토를 하고 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중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차관님, 이것 그 개념 아니에요? 지난번에 문제 돼서 훈련 나갔을 때 병식 같이하고 나중에 돈 청구해서 받은 거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김병주 위원** 훈련 나갈 때는 그대로 먹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는 하루에 한 끼 나오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간부들……

○**김병주 위원** 훈련 나가면 세 끼를 먹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김병주 위원** 사실은 훈련 때 그것을 보전하게 되면 훈련 것 세 끼 빼 버리면 나중에 급식비로 받을 게 없지, 솔직한 얘기로. 마이너스로 돈을 더 내든가. 훈련 사항 가면 예외적으로 같이 먹게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실제. 그런 것들을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해야지 훈련 갔다 왔는데 자기 급식비 플러스, 예를 들어서 한 2주 갔다 오면 한 20만 원씩 더 내면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은 먹는 것……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돈을 더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난번에 나오던데, 훈련을 짧게 해서 그렇지 길게 하면 더 내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 나온 이후에 그 차액에서 더 내야 되는 것만큼은 지금은 간부 훈련급식비로 보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더 내는 게 없는데, 이 법안은 뭐냐 하면 기준에 줬던 13만 6000원이라는 영외급식비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플러스 되는 것을 보전해 주는 거였거든요, 추가로 내야 될 것들을. 그런데 13만 6000원 이것에 대한 것들은 다 빼고 그냥 다 똑같이 13만 6000원 다 주고 여기서 걷지 말고 또 현물도 줘라, 급식을.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중 지급 문제가 나온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평상시 부대에 있을 때가 아니라 훈련 때는 그냥 먹게 해 주는 게 맞지요, 훈련 때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수관리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예.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영외에서 식사를 하는 날은 자기 영외급식비로 먹고 훈련이 돼서 부대에 들어오면 영외급식비를 받지 않고 영내 현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생활할 때는 영외급식비를 받아서 먹고 영내에 들어와서 훈련할 때는 영외자 급식비를 안 받고 현물로 밥을 전부 다 제공받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세 끼 다 제공받는 거예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세 끼가 한 끼 부식비에 해당되나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그렇게 되더라도 초과되는 것은, 그러니까 13만 7000원을 나누면 하루에 4300원, 한 끼에 한 1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끼당 1600원만 반납하면 모든 끼니를 다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주 훈련하잖아요. 하게 되면 부식비를 2주치만 받으면 되네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2주 훈련하고 2주 퇴근하면 현금 2주 받고 2주는 현물로 받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예, 올해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추가 더 내는 것은 없네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차관님, 이게 발의된 배경이 지난번 전임 장관님 시절에 북한 오물풍선 대응 때문에 휴일에 간부들 비상출근을 시켰는데 그때 돈 더 내라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현물을,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개정안에 저희들이 넣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문제들……

○임종득 위원 하루치가 급식비에서 빠지는 건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렇지요. 급식비는……

○임종득 위원 훈련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유용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했는데 수방사 1개 부대에서, 그러니까 소규모 부대에서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다시 다 환불해 줬습니다. 단위 부대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원상복구 다 시켰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때 하여튼 그래 가지고 상당히 소탐대실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저는 국방부 현물 중심으로 지급,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당직근무와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직근무하면서 급식을 하는 경우는 급양감독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직근무를 하면서도 병식을 급식했다는 이유로 하루치를 감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

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25년 급식 방침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검토 중인데 그때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건 어떻게 하고 가는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지금 수정동의로 가는 거지요. 영내에서 먹을 때는 현물로……

○**김병주 위원** 3개 안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54페이지 우측 하단 쪽에 ‘실비변상’에서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는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내급식을 하는 경우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국방부 얘기입니다.

○**한기호 위원** 이것은 법으로 하나도 안 만들어도 국방부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해 줘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안 만드는 게 오히려 융통성 있고 국방부가 해 주겠다고 대답만 하면 돼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되는……

○**한기호 위원** 하나는 당직근무를 할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양감독의 임무를 하니까, 먹어 봐야 급양감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식비를 제외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것은 이중이 되더라도 그건 의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한기호 위원** 그것은 국방부가 그렇게 해서 당직근무자가 영내에서 식사하는 것은 카운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훈련 나가서 먹는 것은 해당일에 주는 급식비는 현금을 안 주고 현물로 그날 세끼를 먹는 걸로 간다, 그렇지요? 그리고 훈련 안 할 때는 급식비 돈을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취지는 지금 위원님에게 맞고.

당직근무자에 대한 규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현물 제공을 받는 불가피한 사유라는 이 영역에 과연 이것이 들어가냐, 왜냐하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수당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군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근무자들이 받는 당직수당에는 급식에 대한 비용들도 다 함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물을 제공한다고 해 놓고 그 세부적인 항에 대해서는 급식규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차관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당직근무수당에 급식비까지 포함된다 이건 아니지요. 당직근무수당 안에 급식비가 포함돼요? 당직근무비 얼마 받는데, 얼마 받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2만 원, 4만 원입니다.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인데 5만 원, 1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김병주 위원** 평일에 2만 원인데 급식비 포함되면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당직근무비는 가뜩이나 부족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급식비가 포함되는 개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취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솔직히 급양감독 이런 것 당직근무 서면 군은 해야 되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는 업체가 하니까 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은 임무니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조차도 자꾸 후퇴하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된 것은 전에 감사원 감사 이런 데서 맨날 그놈의 규정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왜 추가하느냐 또 형평성, ‘공무원은 이렇게 하는데’ 하고 따져서 군이 계속 하향 평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법률안은 당직근무까지 고려를 좀 더 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따지고 다음번에 그걸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한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법적인 근거 없이 국방부의 지침이나 훈령으로도 되지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감사원이 딴지를 거니까 필요하면 법으로 아예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소위원장 부승찬** 법만 보고 있으면, 송옥주 의원안이나 유용원 의원안이나 황명선 의원안을 보면 ‘작전이나 훈련’, ‘작전, 훈련, 야간근무 및 휴일 근무 등’, ‘작전, 훈련, 당직근무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등’의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에 장관님도 파병과 관련돼서 ‘그 등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논란이 된 적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 부승찬** 현물로 지급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일과를 제외한 훈련도 될 수 있고 당직근무도 될 수 있고 휴일 근무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논란의 소지가 없잖아요. 그냥 정상 일과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군대에서?

그러면 ‘등’이 3개만 보더라도 어떤 때 제공하는지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다 달라요. 여기 계신 유용원 의원님도 다르시고 황명선 의원님도 다르시고 송옥주 의원님도 다르시니까 이것을 그냥 수정동의로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계속 심사로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병주 위원** 여기에 아까 임종득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음번에 전문위원하고 국방부에서 사전에 조율해서 문구를 다듬고 검토했으면 좋겠네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17항,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육군3사관학교 출업자를 임관 시 장기복무 장교에 포함하고 의무복무기간도 6년에서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인 10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간부들의 복무 동기 강화와 우수인력 조기 확보, 육군3사관학교의 간부 1인당 양성 비용이 학군장교나 학사장교에 비해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다만 장기복무 선발 대상자 수는 매년 유사하므로 상대적으로 학군장교·학사장교 등의 장기복무 선발 소요가 감소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장기적으로 학군장교·학사장교 등의

장기복무 선발이 어려워지면 지원율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는 현 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일단 3사관학교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차원 또 장기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도 동의하고 긍정합니다. 그런데 아직 국방부가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장기 인력구조에 대한 설계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게 되면 아마 상대적으로 학군·학사 기타 장교들의 장기선발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시행하는 쪽으로 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선원 위원** 이것은 실시하고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보완하세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분명히 장관이 장기복무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팔호에다가 육군 의견이라고 써 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늘 사람 모자라다, 부족하다고 해 놓고 실제로 법 고치자고 그럴 때는 신중하다 이러면 안 되지요. 신중한 검토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장기복무 전환으로 해 놓으시고……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곳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시행 하자는 겁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몇 개월 내에 검토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결국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보십시오. 신중한 검토, 향후, 미래, 재설계 그런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써 가면서 결국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시해 놓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시지요. 그게 낫지 언제 이걸 하겠어요.

장관은 전 국민들이, 특히 이 분야에 관심 있는 3사관 출신 간부들, 전역한 사람들이 다 보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이 법안 내용에는 3사관학교 생도들 전부를 장기복무 장교로 하고 현재 6년으로 돼 있는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하는 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복무기간 연장에 대한 문제 또 장기 구조에 대한 변화 문제 이런 것들이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사관 후보생들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안과 이런 것을 마련해서 안정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선원 위원** 차관님, 장기적이라는 게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최대한 빨리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라고 말씀하셔야지 장기적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한기호 위원** 차관님, 제가 출신별 형평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장관님이 대답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은 두 번째이고.

3사관학교 이렇게 하면 ROTC 지원할 사람 있어요? 왜냐하면 출신별로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 그걸 까먹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 영향.....

○**한기호 위원** 이 법 발의한다고 하니까 ROTC 회장님이 ‘해 보십시오, 저희 어떻게 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3사관학교 애들 사기 하나만 올리면 군이 좋아집니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지역에는 솔직히 장교 유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을 아예 안 하려고 제가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출신별 균형이 깨져 버리는데, ROTC 지원한 사람 장기 할 사람 다 없어지면 그러면 ROTC 누가 지원해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3사관학교가 이것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 법을 입법해서 여기까지 오면 잘못된 거예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이게.....

○**소위원장 부승찬** 잠깐만요.

3사관학교 의무복무기간을 28개월로 줄여요, 간호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줄여요, 줄여. 그래서 아예 단기에서 장기심사를 해요, ROTC랑 똑같이.

여기는 제 법도 올라옵니다, 간호사관학교까지 해서. 제 법도 올라오는데요.

형평성을 얘기하잖아요. 어정쩡한 6년이에요, 어정쩡한 6년. 그리고 간호사관학교는 똑같은 사관학교 명칭을 주고 4년 내내 육·해·공군사관학교랑 똑같이 하는데 장기가 안 돼, 이런 관점에서도 봤을 때 그러면 장기도 아니고 단기도 아니고 어정쩡한 6년이 뭐예요, 그 기준은? 그럴 바에는 아예 학군·학사랑 임기를 똑같이 맞춰요.

○**한기호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발해서 지금 2년 반이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장관한테 뭐라고 했냐면 ‘군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성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단 한 번도 국방부가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출신별로 불균형되고 출신별로 문제가 있고 이런데도 지금까지 그저 땀빵식으로만 끌고 온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부족한 건 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기호 위원** 아니, 2년 반 동안 뭐 했어요,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게 1~2년 만에 명쾌한 대안이 만들어질 수.....

○**한기호 위원** 검토도 한 적이 없어요. 세미나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한 게 뭐 있어요? 세미나 한 번 했어요? 양성과정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직무태만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많

은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임종득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아마 국방부가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3사관학교가 최초에 만들어지고 그 제도가 그렇게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6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다 설명을 죽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형평성 논리로 보고 같은 잣대로 놓고 보니까 말이 다 안 되는 거거든요.

3사관학교는 2년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4년간 받는 정규 사관학교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군을 좋아하고 군의 전문성을 갖고 장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임관하는 그 당시부터 장기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해 주고 싶어도 지금 장기 포션 자체가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1년에 임관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명 정도가 장기로 가야지 전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한기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ROTC 출신 중에도 장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학사 출신 중에도 장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이들의 포션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애네들은 장기를 담보하지 않고 단기 자원으로 했는데 장기를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사하고 3사관학교가 다 차지해 버리고 나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소수의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초급간부들이 오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고민하면,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장교 자원을 어떻게 단기 중기 장기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손봐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제가 발의한 법이 곧 올라오거든요.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용의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어요. 3사를 꼭 육군만 가야 돼요? 해공군에도 갈 수 있게, 해병대에도 갈 수 있게끔 해 주고 간호사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택해서라도…… 여군 2027년까지 15% 늘린다면서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간호사관학교 출신들 좀 더 많이, 간호사관학교 나왔다고 꼭 간호장교로만 가야 돼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해군·공군에 여군 모집할 때 간호장교들이 왔어요, 병과 전환해서. 그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면 원하면 해병대도 가고 해군도 가고 인력을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맞지 않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6년이 뭡니까, 6년이. 물론 설명할 게 많겠지요, 6년을 정한 이유. 설명할 것 많은데 무슨 6년씩 해요? 그냥 ROTC 같이 28개월로 딱 끊어요. 그리고 장기자 받아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사관학교 명칭 빼요. 무슨 간호사관학교야, 무슨 3사관학교야,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최단기간 내에 의무복무기간을 6년에서 몇 년으로 줄이든 그렇게 해서 동등한 레벨에 올려 놓고 평가를 해 줘야지 의무복무기간도 6년 어정쩡해 그리고

장기도 안 시켜 줘 어정쩡해, 희생 강요해, 지금 세상이 변했어요, 과거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수용 못 하면 육해공군, 해병대 3사관학교하고 간호사관학교 출신들 30%를 선택하든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의 창도 열어 주고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박선원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예.

○**박선원 위원** 다 좋은 말씀인데요.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도 ROTC 이야기하셨는데 학군이냐 아니면 3사관학교 출신이냐에 대한 형평성이나 그분들의 소위 균형성 내지는 민원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군이 정말 허리가 강한 군대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고급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충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육군 내에 이런 의견이 마치 이렇게 나오면 기득권 주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아니면 신중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최다, 학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두 차례 열고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는 절차를 정해 놓고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신중한 검토, 향후 미래병력 재설계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허들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차관님 재임기간 동안 안 하신다는, 즉 내가 육사 출신이니까 내가 막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관님의 의도나 본심까지 제가 여기서 드러내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스케줄을 6개월 내 계획을 넣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빨리하자, 신중하게 하자 그것이 아니고 최소한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번 기회에 군인사법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해 가지고 우리 군의 근간을 정말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학군, 3사관학교 그리고 간호사관학교까지 다 함께 보자 해서 6개월 내로 끝냅시다, 그러면.

○**소위원장 부승찬**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도 말씀이 결국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각 계각층의 의견도 구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3사관학교를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면, 우리 전례도 있잖아요. 사관학교 인원 제가 갈 때는 325명인데 200명 뽑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성 있게 하면, 모수를 정해 놓고 칠십몇 %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입학정원을 줄이는 이런 방안도 있고 다양한 방안이 있을 거니까 테이블에 올려 놓고 전체적으로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빠르게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 놓고 해야 이것도 빨리빨리 가는 거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중한 검토, 미래, 향후 이런 얘기 나오면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요.

○**유용원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해서 한 말씀……

○**소위원장 부승찬** 예.

○**유용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 위원님 6개월 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미룰 게 아니고 한기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

교, 부사관 포함해서 의무복무기간 문제 그다음에 장려금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공청회를 한번 하시지요, 안을 제시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하고 적극적으로 다 찬성하실 것 같은데 그런 장을 국방부에서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셔 가지고 한번 만드시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공청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계획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해서 스타트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1/4분기로 정합시다, 정해.

○**한기호 위원** 여기서 정한다고 지켜지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국방부 여건에서……

○**소위원장 부승찬** 최대한 빨리 그 계획을 국방위에다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조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은 중앙전공사상심사와 관련된 처리기간을 법으로 명시해 군 복무 중 사망·상이자와 그 유가족 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통상적으로 재심사·의결 완료까지 약 12개월가량이 소요되는바 처리기간을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은 군 복무 중 전사자 등과 그 유족이 보다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재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재심사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전사자 등 또는 그 유족에게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심사 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공사상 심사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심사기간 연장사유 등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기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건당 평균 소요 심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의 일률적인 ‘90일 이내의 재심사·의결’ 규정은 현재 처리 절차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하여 120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대로 수정한 의견을 수정 동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9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120일 정도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지금 현재 19년부터 24년까지 한 5년 평균 보면 연 평균 220여 건, 월 한 3회 정도 이것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고된 것 중에 아직 심사

중에 있는 것이 한 100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90일 이내에 물리적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120일 정도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상태에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현재는 연평균 보면 지금까지 많이 걸릴 경우에는 한 12개월 정도까지 걸린 이런 심사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20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19항과 20항 임종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인사법과 병역법 개정을 통해 연령정년에 도달한 군인 등도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퇴역 대상자 중 여군에 대해서만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현역으로서 연령정년 도달로 자동 퇴역하는 간부 등에게도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부족한 예비전력 소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퇴역 대상자가 희망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하여 추가 복무를 하는 것은 강제적 병역의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규정하는 법률은 병역의무를 규정하는 병역법이 아니라 현역과 예비역의 신분, 임용,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법체계상 관련 내용을 군인사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방부는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저희 전문의원실 수정의견은 69페이지 우측 하단을 보시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문언상으로는 비 전·공상(非 戰·公傷)으로 인해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은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는 반면 제41조제3호에 해당하는 전·공상으로 인해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은 예비역에 지원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인사법에서 예비역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예비역 지원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상자 중 예비역으로 운용 가능한 인원을 선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72쪽 우측 하단에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국방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이니까 아주 좋은 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우리 국방력에 증가 요인이 있는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한번만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퇴역자로 돼 있는 분들이 예비역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자원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예비역자원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자원적인 소요뿐만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퇴역자가 예비역으로 전환돼서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자진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부인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증가될 수 있는 인원은 제가 실무한테 확인하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확인해 보시지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국방부 동원기획관 김신숙입니다.

지금 1호에서 4호까지 이런 경우에는 퇴역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오직 현행법상에서는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만 다시 지원에 의해서 예비역으로 올 수 있게 해 놔서, 사실 지금 현재 1·2·3호 즉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정년에 도달한 사람, 전상·공상으로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은 현재 당연퇴직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퇴직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그 순간 퇴역을 원하지 않고 예비역으로 지원하는 사람 아니면 그 순간 퇴역을 했지만 1년,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내가 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싶다, 혹은 예비역이 되어야만 지금 현재 예비군 기획관 또는 비상근 예비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그렇게 해서 다시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근거규정을 마련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예비역으로 올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아직은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는 전혀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올 수 없었던 반면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법을 바꾸면 돈이 더 들어가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추가 예산 소요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관리하기 위한 인원이 더 들어가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국방부가 뭘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추계를 할 수 없다는 게 지원해서 숫자가 늘어난다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사람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예비역 인원이 더 들어나는데 예측을 하든 말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국방부가?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자기가 퇴역이 된 것을 나는 예비역으로 지원하겠다는데 해 주자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차관님이나 동원기획관님이 제가 할 얘기들을 대부분 했어요. 그런데 발의 동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병역 자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특히 2034년 이후에는 더 심각해져요. 그런데 퇴역이 되고 나면 지금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상근예비역 제도도 되고 하는데 그렇다면 퇴역으로 된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열어 주자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병역 자원 부족한 부분들을 상근예비역이라든가 아니면 PMC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예비역들을 경계근무나 이쪽에도 써야 될 소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차원에서 법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 주자라는 차원에서 제의를 한 겁니다.

○**박선원 위원** 전시 동원이야 당연히 퇴역이든 예비역이든 그 연령이나 특기별로 되겠지만 그렇지만 평시에 우리가 전력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비역의 풀을 넓혀 놓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군 병력 전체적인 운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임종득 위원** 선택의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역이 됐을 때만이 상근예비역도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하게 될 경계근무에 대한 예비역들의 채용 이런 기회들도 잡을 수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임종득 위원** 아무 것도 없지요.

○**박선원 위원** 관리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임종득 위원**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좋은 것 잘 찾아서 발의하셨네요.

○**유용원 위원** 적극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 이상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합 조정해 정리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부승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3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과 관련된 3건의 개정 내용입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시임무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병무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평시에 전시임무교육을 통한 병무담당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일과 시간 내 별도의 시간 할애 허용 등 교육 여건 조성이 필요하므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무청장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자체·합동 평가에 반영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된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반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임무교육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독려할 효과적인 유인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경우 행안부 소속 지방자치단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지표를 심의 결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개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평가지표의 합동평가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취지와 일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 개정 조항 관련 부처인 행안부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최규석** 최규석 병무청 차장입니다.

전시임무교육은 현행법에서는 병무청의 교육 실시 의무만 담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직원 이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는 교육 이수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다음에 병무청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개정안대로 시행 시에 실효성이 상당히 높고 교육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임종득 위원** 반대 의견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병무청차장 최규석** 지금 합동평가 부분은, 3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하고 합동평가를 동시에 반영하는 입법례가 보면 거의 없습니다. 합동평가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합동평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전문위원이 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평가는 포함되고 그다음에 합동평가, 저희 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종득 위원** 완료가 됐는데 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행안부와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임종득 위원**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협조가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병무청차장 최규석** 자체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합동평가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한기호 위원** 평가까지만, 그러면 합동평가만 빼면 될 것 아니에요.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합동평가를 빼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기호 위원** 수정안에 수정해서 넘어가면 돼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다음.

○**전문위원 류승우** 의사일정 제22항,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초급간부들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전환복무자만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초급간부인 장교나 부사관 중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초임 계급이 중위 이상으로 임용되는 장교들을 포함할지의 여부 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간 1858억 원가량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시행령에 정부 재정지원금 지급 기간의 한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고 적용례를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최규석** 초급간부에 준하는 보수 체계를 적용받는 공중보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 공익법무관 그다음에 공중방역수의사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보의 등은 복무 형태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없고 역종 결과에 따라서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보수 차이를 보전하는 정책보다는 병역 의무자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최초로 내일준비적금을 시작할 때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도 동시에 같이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국방부도 관련돼서 국방부 복무자, 군의관, 군법무관 이런 중위로 임관하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형평성에 의해서 동일한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국방부의 추가적인 의견은 부칙에 보면 이게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에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25년도 1월부터 이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정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기재부.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사항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도 설계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층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초급간부들은 내일준비적금은 받고 있지 않지만 임용전에는 단기복무장려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단기복무장려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설계를 할 건지,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초급간부들에 대한 수당 형태로 주는 것이 더 나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초급간부들의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상 퇴직수당을, 보통 저희가 한번 보니까 하사로 임관하신 분이 4년 복무 후에는 한 900만 원 정도의 퇴직수당을 받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조기에 전역하기 때문에 군인연금은 못 받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시 할 때는 국가부담금 7%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입 범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무청에서 제기한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 이런 분들을 포함할지의 여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분들은 군의관이라든가 다르게 업무활동장려금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하사·소위 등 초급간부들의 근무여건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사·소위분들 말고, 이분들한테 병장하고 똑같은 55만 원을 줬을 경우에 일반 대위분들하고 격차가 굉장히 줄어드는데 그러면 또 일반 대위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세제 당국하고도 지금 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도 되어 있는데 이 비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세제실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세제실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연간 1800억 정도 재정 소요라고 그러는데요. 또 병무청에서 제기하신 이런 분들을 했을 경우에는 재정 소요가 막대하다고, 한 1800억, 2000억 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인 관계부처 협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어느 것 하나만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통합을 해 가지고…… 지금 단기복무장려금, 내일준비금 이것을 다 통합하면 실제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다 해소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법을 따로 만들어서 간다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리고 매년 올리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사안별로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단기복무장려금, 지금 부사관들 1000만 원, 장교 1200만 원 그다음에 내일준비금, 장교 임관한 다음에 주는 것 이것을 다 하나로 묶으라니까요. 묶어서 가면 그러면 재정 소요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줄어들 거고 또 형평성도 다 가져갈 수 있고 이렇거든.

이것은 뭐 보나 마나 기재부는 무조건 반대지요. 신중 검토면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기재부가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반대한다 그러면 못 가는 거거든. 그러면 기재부도 인정할 만한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니까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기재부가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 좀 저희들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모았는데 저희가 단기복무장려금이나 수당을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0만~1200만 원인데 그것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하고,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장려수당 그 상태에서 계속 주고 이걸로 만약에 전환을 한다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의견을 기재부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본질은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교는 부사관 전체가 다 임용이 되는, 2년 내의 근무로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관생도, 3사 간사 특전사 등 그동안 못 받았던 임기제 부사관들, 그래서 하여튼 단기 복무라고 하는 모든 간부들, 2년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되고 55만 원을 주면 이 사람들이 내일준비금같이 그런 형태로 받으면 한 1320만 원을 2년 뒤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당으로 나가는 것도 한 1000만 원대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게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이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의 불균형성 불평등성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동의안을 냈고.

전체 재원을 보니까 이게 한번 가입하면 2년 뒤에 지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25년 1월 1일 하면 실제는 27년에 지급을 하게 될 것인데 한 1700억~1800억 정도 재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 1월부터 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미 국방 예산은 통과가 된 상태라고 봐도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것을 국방 예산과 별도로 1월 1

일부터 시행하면 1800억 원을 더 넣어야 된다는 뜻 아닌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 1800억 원이 27년부터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27년 예산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박선원 위원** 인원은 1월 1일로 하되 집행은 27년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2년 동안 본인이 적금을 드는 거니까요.

○**박선원 위원** 그리고 아까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 계셨는데 이번에 부사관을 비롯한 여러 초급간부들에 대해서 수당이 됐든 월급이 됐든 올려 달라고 해서 조금 인상해 주시지 않았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최종 의견을 줬고 마지막에 아마 소소위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주제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지역구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 구청·시청 중에 월급 책정이 안 된 데도 많아요. 내년 10월 이후 월급 없다고 하는 기초단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잘 좀 소요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지역에서 5만 원, 10만 원 매칭 안 돼서 못 받는 것도 많거든요,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있어서.

○**소위원장 부승찬** 기재부 심의관님!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예, 아까 국방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기재부에서 단기복무장려금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해 볼 수 있다’는 말은 저희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앞으로 더 논의하고.

○**소위원장 부승찬**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가기로 하고요.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류승우** 15페이지입니다.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 수령과 관련된 3건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먼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 수령 후 본인 전달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대리수령자의 통지서 전달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통지서를 병역의무부과 대상자에게 전달할 시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명문화하고 대리수령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대리수령인 선정 시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참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개정안은 유사한 법률인 예비군법의 예비군 소집통지서 관련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통지서 전달 행위 방식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함으로써 적법하게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대리수령인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는 점에서 사전에 수령에 대한 동의 절차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세대주'를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고용주'를 '본인의 고용주'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한 개정 사항 또한 법조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설명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최규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자료 23쪽에 보시면 동 개정안은 대리수령인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더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본인 전달 방법이 현행은 지금 구체적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개정안에서는 직접 전달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법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 태만 시 처벌 수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시 처벌을 강화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자 전달 의무 태만 시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21페이지 표를 보시면 현행 병역법을 예비군법과 동일한 처벌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달 의무 태만은 현행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벌로 되어 있는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추고, 그다음에 통지서 수령의무자 수령 거부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법재판소는 2022년에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를 행정 절차적 협조 의무로 보아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유사한 규정인 병역법상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통지서 전달 의무 태만 시 처벌 규정을 형벌인 현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행정질서벌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해당 조문의 위헌적인 내용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안 제95조제5항에서 ‘세대주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통칭하고 있는데 과태료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안 제85조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의 무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시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법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으로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설명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최규석**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현 규정은 병역의무자와 대리 수령인의 책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처벌은 강화하고 그다음에 대리수령인의 처벌 기준은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현행 예비군법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수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26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25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26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무요원의 가입 금지 정치단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만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 종류를 현행 정당 외에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국가공무원과 같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관련 법 심사 경과를 보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정부가 제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저희 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행안위에 동 내용과 유사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제출되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심의 결과에 맞춰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26항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최규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후에 심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전예비군과 관련된 3건의 개정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전예비군 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전예비군 편성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없으나 현재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비군법시행령에 규정된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특전예비군부대에 편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전예비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전예비군은 일반 예비군훈련 외에 작계훈련, 특전여단 입영훈련을 추가로 받는다는 점에서 개정안 내용과 같이 육군특수전사령부 복무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특전예비군으로 편성될 경우 병역의무 부담 비중이 일반 예비군의 병역의무 부담 수준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전예비군 훈련 및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법률에 관련 규정은 없으나 훈령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전예비군 훈련에 관하여 국방부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의 특전예비군을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훈련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특전예비군 훈련 실시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특전예비군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특전예비군을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전예비군 양성을 내실화하고 예비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전사 전역자들을 전부 다 특전예비군에 편성하는 것을 의무로 하게 되면 어떤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 검토가 필요하고, 육성·지원 분야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이게 의무조항으로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의 과도한 제한을, 어떤 재정적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전문위원의 수정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지금 자의에 의해서, 자원에 의해서 특전사 전역한 사람이 특전예비군에 지원한 게 몇 명이나 돼요, 1년에?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동원기획관입니다.

574명입니다. 1년이 아니고 전체가 574명입니다.

○**한기호 위원** 전체가?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예.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도별로 나누면 인원이 많지 않겠네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의무로 하면 1년에 특전사에서 그냥 전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그것은 지금 자료로는 따로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그게 대략적으로 숫자를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과반수가 되나, 안 되나?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지금 이 특전예비군이라는 것은 특전사를 나온 예비군이 편성된 것과 별도로, 그 사람들은 어차피 특전사예비군에 당연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간부가 6년간 예비군 임무를 다 수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가 또 예비군 임무를 더 하고 싶어 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특전사를 나온 사람은 특전예비군으로 다 편성돼 있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그냥, 전역한 사람 몽땅 다 포함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법은?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예, 그래서 그 의무 규정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기호 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군 생활, 특전사에서 원사로 전역을 했어요. 전역했으면 55세야. 그러면 55세인데 아까 임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예비군 면역 대상이야. 그렇지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예.

○**한기호 위원** 면역 대상인데 자원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은 열어 놨어. 그런데 이것은 의무로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의무로 하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보고하지 않고 넘어갑시다.

○**임종득 위원** 이것은 자원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요 사실은 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향방예비군 쪽이 더 소요가 긴급하고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특전사예비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6년간의 예비역 의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선영의원보좌관 이월형** 강선영 의원실 수석보좌관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안 됩니다.

○**강선영의원보좌관 이월형** 안 됩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 발언 기회를 주시면 돼, 위원장이.

○**강선영의원보좌관 이월형** 위원님께서 주신다면 한 말씀……

○**소위원장 부승찬** 저의 권한입니까?

○**임종득 위원** 위원장이 안 주면 안 돼.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도 옛정이 있어서……

○**강선영의원보좌관 이월형** 여기 편성 및 해체 등에 관한 수정의견에 후단 삭제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실제로 이런 육성지원금이 지자체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예비군하고 40살이 넘어가 있는 특전지원예비군하고를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주는데 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니 인원이 최초에 1200명으로 출발한 특전예비군이 지금 오백몇 명까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에 대해서 유인책을 확보해서 좀 더 후방 대침투작전의 예비전력으로 활용하자라는 데 본 법안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게 수정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임종득 위원** 예, 문제없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문구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위원 류승우** 예, 36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가 대답을 해야지.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그리고 제23항·24항, 이상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20항·제22항·제25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그런데 지금 특전사 예비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정해서 가는 거야, 아니면 다시 보류야?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뒤에서 낸 수정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가는 것으로 국방부는……

○**한기호 위원** 오늘 여기 통과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국방부차관 김선호** 되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되는 거야?

○**소위원장 부승찬** 예, 수정안대로.

○**한기호 위원** 그러면 수정안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의무적’이라는 표현하고…… 그것 몇 페이지였지요, 아까?

○**전문위원 류승우** 36페이지입니다.

○**한기호 위원** 의무로 한 걸 빼면 마찬가지 아니야?

○**임종득 위원** 의무조항이 아니고 선택조항이다라는 부분이 바뀌어야 되고 ‘우선적’ 하고 부분도……

○**소위원장 부승찬** ‘우선적’ 하고.

○**한기호 위원** 의무를 빼면 지금 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야.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네요.

수정의견, 37쪽 보시면 14조의3 2항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도 의무조항인데.

○**임종득 위원** 지원하는 것은 우선적이 아니면 다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육성·지원에는.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도.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 법을 만들었으므로 지금 현재하고 뭐가 변화가 오느냐 이거야, 변화가 없다니까? 이렇게 만들면 특전예비군이 늘어나나?

법의 실효성이라고 하거든, 실효가 있느냐는 거야,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특전예비군을 지원 안 하던 사람이 이 법을 바꾸면 지원하는가? 혜택이 있는가? 의무가 더 늘어나는가? 이 법은 그냥 권장법이라고 권장법, 그냥 권장법이거든. 실효성은 없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판단하나요? 실효성은 없다니까요. 전부 다 권장이지. 지금도 권장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 지원에 의하면 가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니까요. 법을 만드는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지.

아니, 국방부에서 대답해 보세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위원님, 동원기획관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왜냐하면 우선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그리고 특별히 더 다른 어떤 특전이나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강선영 의원실에서 발의한 취지가 이미 시행령으로 있는 것을 사실 법으로 옮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전예비군에, 스스로 의무도 아닌데 자기가 지원을 해서 전국의 지역대에 속해서 특전예비군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도 표하고 이분들의 어떤 자긍심도 고취하는 효과가 충분하고 또 저희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특전예비군은 안 해도 되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예비군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다시 특전사에 소속해서 특전예비군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올려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기호 위원** 문제는 없지만 법이 됨으로써 실효성이 뭐가 늘어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실효적으로 크게 바뀌는 것을 저희가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중에 육성·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라는 문구는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라고 바꾸었는데요. 사실은 지역예비전력에 대한 구조 개선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특전예비군들이 추가적으로 1박 2일 하시는 분들도 다른 예비군에 비해서는 분명히 우수하고 지역의 안보 차원에서는 크게 저희가 활용할 곳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지역예비군 구조에서 기동대라든가 특전예비군을 좀 더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에 맞는 지원도 추가적으로 향후에 검토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것 제도개선의 문제지 법률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시 두 번 읽을 수는 없고 20~25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아까 읽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3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소위 심사자료 4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의사일정 제28항 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품원 임직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와 그 요건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품원 임직원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국립묘

지에 안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품원 임직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적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동법을 개정하여 안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하여 안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방위사업법이 아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입니다.

기품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마찬가지로 무기체계의 품질보증이나 국방기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 분야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이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을 통과시키고 국가보훈부에서 국립묘지법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립묘지법은 제가 다시 발의를 해서 그것 넣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을 안 통과시키면 또 논의가 안 돼요.

○**소위원장 부승찬** ADD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ADD는……

○**소위원장 부승찬** 방위사업법에도 들어가고……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아니, ADD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ADD법에 들어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똑같은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훈부 국립묘지법에 지금 들어가 있고?

○**전문위원 류승우** 아닙니다. 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국립묘지법을 손을 안 대도 됩니다. 공무원 의제를 받기 때문에, 순직했을 경우에 공무원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두 법에 동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면 갈 수 있다라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의견들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통과시키면 돼요.

○**임종득 위원** 반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국가보훈부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법에다가 지금 고치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전혀 문제가 안 되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할 건……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없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없습니다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류승우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29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참의 소요결정 과정에 선행연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합참에서 무기체계 소요결정 후 방사청에서 선행연구를 실시한 다음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순서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무기체계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통합 수행하고 소요결정 이후 선행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절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체계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무기체계 획득 절차 기간이 단축되고 중복되는 항목이 최소화되어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현행 순차적 사업 추진 절차가 규정된 배경에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현행과 같이 긴급소요가 있거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요결정 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제17조제1항 단서의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개정안 입법 취지가 소요기획을 효율적으로 향상하고 전력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에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방사청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임종득 위원 여기 17조 1항 단서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다 포함된다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음.

○전문위원 류승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은 기품원의 국·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해서 국방연구소와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품원에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등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기품원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특례는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품원이 군수품 품질보증 및 시험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처인 행안부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기품원의 사업은 지방자치사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형평성 및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14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품원에 국·공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국유재산법은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사용허가 등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품원에 대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및 대부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갱신을 위한 주기적인 행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 및 대부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기품원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기 사용허가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장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돼서 기재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처인 행안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사유와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품원에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는 국유지나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종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의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처인 행안부는 마찬가지로 부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품원을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기품원은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기능이 상실되어 해당 작전 시설을 대체하는 사업에서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품원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간주하여 효율적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간주되면 21페이지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 권한을 부여받고 다양한 의제 및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개정안은 국과연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기품원에도 적용하는 건데요. 신뢰성시험이나 수출 관련 시험 업무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품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 방사청의 기품원이라는 곳을 행안부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행안부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국립묘지 안장 법도 마찬가지고, 행안부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우선 국방과학연구소가 기품원의 기능하고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 동의를 할 텐데 이해를 못 하니까 ‘기품원? 기술품질 검사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 땅을 쓰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DD와 임무가 같은데 품질 검사하고 이런 거지만 기술 검사는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다라는 설득을 해야지만 이게 법이 되지.

그래서 제가 봐서 이것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설득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설득한 다음에 이 부분을 동의를 받고 통과시키는 방법. 어느 것을 선택하든 하나를 선택해야 돼.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행안부 설득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전제로 하면 이 법이 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안부 설득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법사위 가면 부처 합의가 되어야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설득해서……

○**소위원장 부승찬**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이게 조금 급한 거지요, 방산 수출 이런 것 연관돼서?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지금……

○**유용원 위원** 내년 넘어가면 어려워지는 그런 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우주인증센터도 또 새로 지어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원이 되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 전력화하는 데도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통과.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3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합 조정하여 정리한 방위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1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국과연 시험장 주변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범위에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현행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물자 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시험 등이 이루어지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의 주변지역 중 군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방산 수출 활성화에 따른 수출을 위한 검증·개량 목적 시험의 증가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인 반면 일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에 대한 개별적 보상만 가능하고 그 금액 또한 크지 않아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별도의 금전적·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총 7개의 시험장 가운데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안흥시험장 한 곳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다른 시험장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 등 다른 유사 기관의 시험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지원 내용과 범위, 추진 절차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2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용역 위·수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과연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용역 위탁·수탁 및 지원사업을 국과연 정관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용역 위·수탁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다른 시험장과의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성일종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법이라서 참 괴로운데 우리 군의 훈련장을 포함해서 사격장, 시험장 이런 데가 있는 데서 피해가 발생하는 건 소음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각 부대가 군민 유대 관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더 추가 지원한다 그러면 이 법이 나온 다음부터 다른 데가 다 난리를 친다고, 이것 감당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홍시험장에서 자의적으로 지원하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법을 딱 만드는 순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금일 법안소위에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법을 발의하신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 지켜보면 한기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인급식기본법안 그리고 군인사법과 관련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의하신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진밀히 해 주셔 가지고, 물론 소위에서 심사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하신 위원님들과 진밀히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런 점에 유의를 하셔 갖고요 앞으로 법안소위 전에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한기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또 왜요?

○**한기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꼭 해야 돼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한기호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가 총 7명으로 네 분이 계셔야지만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의힘 세 명 중에, 제가 아까 갈까 하다가 제가 나가면 의결을 하나도 못 하기 때문에 끝까지 앉아 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도 최소한 세 분 중에서 합의하셔서라도 한 분은 계셔야 돼요.

사실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중간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와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민주당 위원님들도 성실하게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민주당 위원으로서 송구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 허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김선희  
법무관리관 홍창식  
지능정보화정책관 천승현  
국제정책관 이승범  
인사기획관 오영대  
동원기획관 김신숙  
보건복지관 김은성  
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전력정책국장 원종대  
첨단전력기획관 류효상  
중앙전공심사지원단장 김종선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강정화

병무청

차장 최규석  
입영동원국장 문경식  
사회복무국장 정홍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배철훈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방위산업진흥국장 김일동  
국방기술보호국장 권영철  
정책조정담당관 도윤희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신진교  
국방기술품질원

품질연구본부장 이창우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국방예산과장 권기정